

제출하지 않으면 취학지원금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서류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하지 않는 분이라도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취학지원금 확인표(마이넘버용)」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1 취학지원금 확인표(마이넘버용)
- 2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양식 제1호)

◇ 서류에 기재할 때, 특히 다음의 확인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심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뒷면)의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뒷면)의 2023년 1월 1일 시점의 주소지

※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는 이전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는 하셨습니까?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7월~2024년 6월분은, 2023년도의 세액(2022년 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마이넘버’로 세금 정보를 취득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취학지원금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지급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취학지원금제도란 ?

◇ 취학지원금제도란 ?

신청 수속을 해야, 취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대신해 국가로부터 취학지원금을 수령해, 수업료에 충당하므로,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취학지원금이 수중에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대상이 되는 세대는 ?

다음 계산식(보호자(친권자) 전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4,200엔 미만(연수입 약 910만엔 미만)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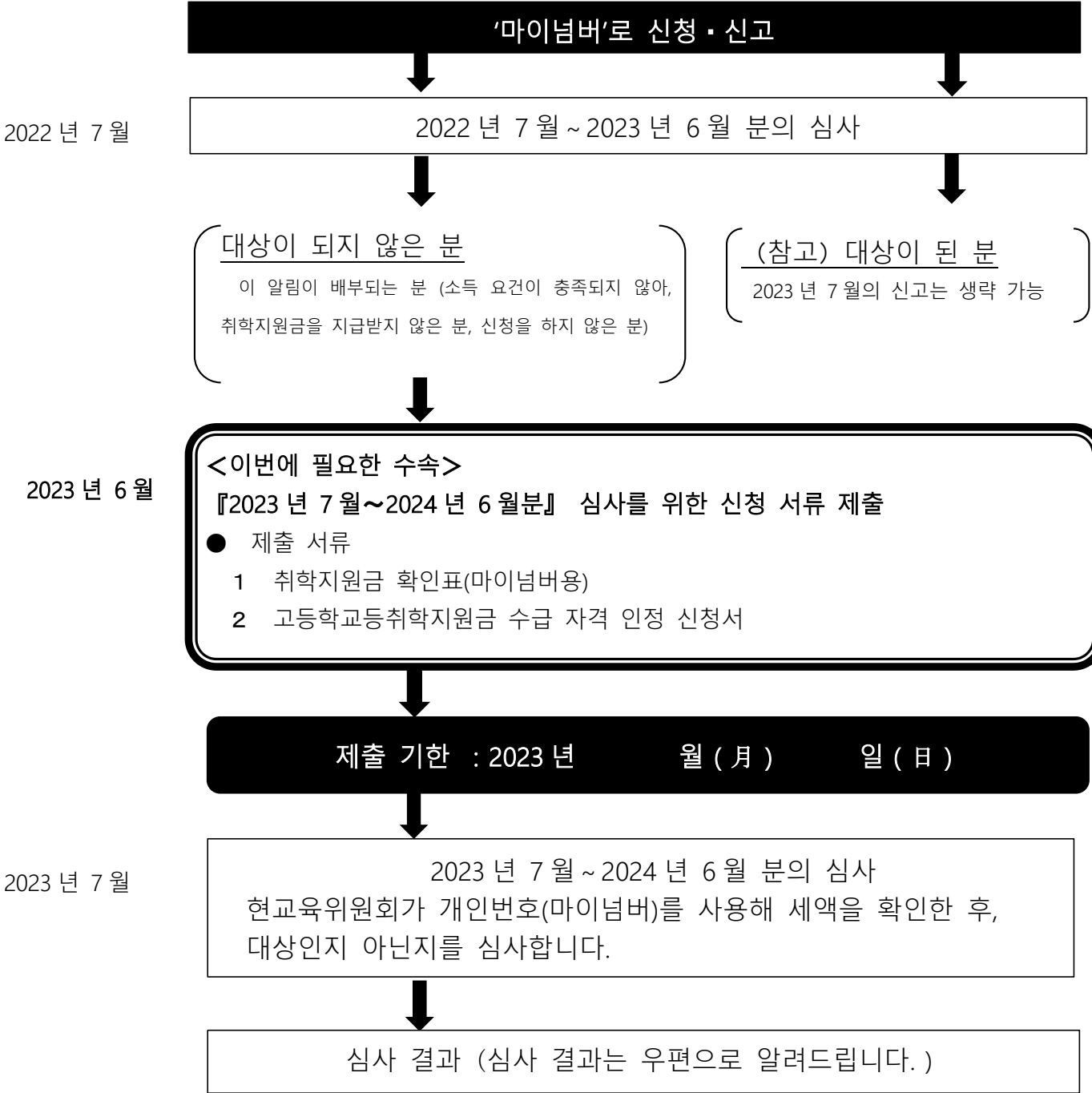
【계산식】시정촌민세의 과세표준액 × 6%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 정령(政令) 지정도시인 경우에는 「조정공제액」에 3/4를 곱해 계산

※ 2023년 7월~2024년 6월분 심사에서,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 등이 늦은 생으로 부양공제 적용이 다른 동학년 학생보다 1년 늦어지는 경우(2007년 1월 2일~4월 1일생의 학생이 해당),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계산식】(시정촌민세 과세표준액 - 33만엔) × 6% - 시정촌민세 조정공제액

◆ 취학지원금(2023년 7월 ~ 2024년 6월 분)의 일정



(참고) 가계 급변 세대에의 지원에 대하여

- ◇ 가계 급변 세대에의 지원이란?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심사에서, 연수입 약 910만엔 이상인 세대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수업료를 납부하시는 분이어도, 그 후의 사정으로, 가계 급변(수입의 격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제도의 가계 급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가계 급변 지원이 2023년도에 새로 창설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용)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꼭 제출하십시오.)

학생 성명 _____	반 등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_____
보호자 1 (성명) _____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_____
보호자 2 (성명) _____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_____

주의 사항

- 확인사항의 번호에 따라 기입하십시오.
- 학생 본인이 기재하십시오.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

확인 사항 1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을 신청하십니까?

【아래 중 하나에 표를 하십시오.】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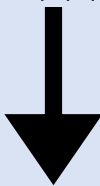
(취학지원금 대상이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확인 사항 2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용) <본 용지>
기입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용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3 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용) <본 용지>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 기타 ()

신청하시는 분은 뒷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접수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확인 사항 3

- 확인 사항 2의 제출 서류는 장학급부금 지급 사무에서도 사용하겠습니다.
- 장학급부금 (가나가와현 고등학생등 장학급부금) 이란 ?
생활보호 수급 세대 또는 주민세 소득할 비과세인 세대를 대상으로,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급부금(반환할 필요 없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
<http://www.pref.kanagawa.jp/docs/en7/cnt/f531013/>
- 장학급부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는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등은 학교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6월 하순경)
- 취학지원금의 신청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장학급부금의 신청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재차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게는, 학교에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례

令和〇年〇月〇日

이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

神奈川県教育委員会 殿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受給資格認定申請書 (初回時)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以下「就学支援金」といいます。)の受給資格の認定を申請します。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첫 회째)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이하「취학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收入 届出書 (2回目以降)

既に受給資格認定を受けているため、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して、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届け出ます。

수입 상황 신고서 (2회째 이후)

이미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취학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겠습니다.

(上の2つの□のうち、いずれかの□にレ印を付けてください。)

(次の事項を必ず確認の上、両方の□にレ印を付けてください。)

【둘 중 하나의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처음 취학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신청서(첫 회째)」에, 레표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취학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던 분은「신고서(2회째 이후)」에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두 개의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학생 본인이 기입.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 별지 기입상의 주의 및 유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해 주십시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고,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부정 이득의 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명과 '후리가나'를 기입하십시오.

(以下の空欄に生徒本人が署名してください。保護者等による代筆も可能です。記入に当たっては、別紙の「記入上の注意」及び「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から記入してください。)

ふりがな	ばんごう	こたろう
生徒の氏名	番号	子太郎

학생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生徒の生年月日 平成19年8月15日

학생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生徒の住所 神奈川県横浜市 中区日本大通り1000

전화번호는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연락처를, 보호자 전원 분 기입하십시오.

保護者等の電話番号 父090-0000-0000 母080-0000-0000

전자 메일 주소는, 연락이 되는 것을 하나 기입하십시오.

保護者等の電子メールアドレス XXXXXXXXXXXX@XXXXX.XX.XX

生徒が在学する学校の名称 神奈川県立〇〇学校

【1.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에 대하여】 (수입상황신고서의 경우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등(수학 연한이 3년 미만인 학교는 제외합니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
-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정시제·통신제 등은 4분의 3으로 계산)이 통산해 36 개월을 초과한 사람 (다만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등에 입학(전입학)한 날짜 등을

①現在通っている高等学校等の在学期間	神奈川県立〇〇学校	年月日 ~ (うち支給停止期間等) 年月日 ~ 年月日	①高等学校(全日制)
--------------------	-----------	-----------------------------	------------

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했던 경우는 여기에 기입하십시오.

②過去に別の高等学校等に在学していた期間	학교名	年月日 ~ 年月日 (うち支給停止期間等) 年月日 ~ 年月日	학교의種類・課程・学科
----------------------	-----	---------------------------------	-------------

【2.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하여】

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개인번호카드의 사본,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①~⑦ 중에서 하나의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1) 다음의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권자(부모) 2명분 학생이 미성년(18세 미만)이고 친권자(양친)이 2명 존재하는 경우		
②	<input type="checkbox"/>	친권자 1명분 (ア 또는 イ 중 어느 하나의 □에 ㄴ표를 하십시오.) 친권자가 임시 친권을 가진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인 경우에는 ⑤~⑦ 중 하나에 체크해 주십시오.		
		<table border="1"> <tr> <td><input type="checkbox"/> 아</td> <td>친권자 1명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이</td> <td>·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친권자 1명의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아	친권자 1명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	친권자 1명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이	·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친권자 1명의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③	<input type="checkbox"/>	미성년 후견인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 단, 미성년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을 제외합니다.)		
④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주된 생계유지자'라고 한다)(양친 등) 2명분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 성인이 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		
⑤	<input type="checkbox"/>	주된 생계유지자 1명 분 (ア 또는 イ 중 어느 하나의 □에 ㄴ표를 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아 주된 생계유지자 한 명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이 ·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		
⑥	<input type="checkbox"/>	학생 본인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①~⑦ 중에서 하나의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친권자가 없고,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인원수를 기입하십시오.

(2) 다음 이유로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⑦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전원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없는 등, 개인번호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⑦에 ㄴ표를 하신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이 1~6월인 경우는 그 전년의 1월 1일 현재)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아래 □에 ㄴ표를 하십시오.)

<table border="1"> <tr><td>氏名 (ふりがな)</td><td>ほんごう たろう</td></tr> <tr><td>番号</td><td>太郎</td></tr> <tr><td>生年月日</td><td>1975年 6月 6日</td></tr> <tr><td>生活部조를 받고 있다.</td><td><input type="checkbox"/></td></tr> </table>	氏名 (ふりがな)	ほんごう たろう	番号	太郎	生年月日	1975年 6月 6日	生活部조를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tr><td>つづきからの続柄</td><td>父</td></tr> </table>	つづきからの続柄	父	<table border="1"> <tr><td>氏名 (ふりがな)</td><td>ほんごう はなこ</td></tr> <tr><td>番号</td><td>花子</td></tr> <tr><td>生年月日</td><td>1977年 3月 31日</td></tr> <tr><td>生活部조를 받고 있다.</td><td><input type="checkbox"/></td></tr> </table>	氏名 (ふりがな)	ほんごう はなこ	番号	花子	生年月日	1977年 3月 31日	生活部조를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tr><td>つづきからの続柄</td><td>母</td></tr> </table>	つづきからの続柄	母
氏名 (ふりがな)	ほんごう たろう																						
番号	太郎																						
生年月日	1975年 6月 6日																						
生活部조를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つづきからの続柄	父																						
氏名 (ふりがな)	ほんごう はなこ																						
番号	花子																						
生年月日	1977年 3月 31日																						
生活部조를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つづきからの続柄	母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하시는 분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상기 보호자 등의 그 해 1월 1일 현재(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월이 1~6월인 경우는, 그 전년의 1월 1일 현재)의 시구 정촌까지의 주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table border="1"> <tr><td>都道府県</td><td>神奈川県</td></tr> <tr><td>市区町村</td><td>横浜市</td></tr> <tr><td>住所</td><td>神奈川県横浜市</td></tr> <tr><td>住所が日本国内にない。</td><td><input type="checkbox"/></td></tr> </table>	都道府県	神奈川県	市区町村	横浜市	住所	神奈川県横浜市	住所が日本国内にない。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 <tr><td>都道府県</td><td>神奈川県</td></tr> <tr><td>市区町村</td><td>横浜市</td></tr> <tr><td>住所</td><td>神奈川県横浜市</td></tr> <tr><td>住所が日本国内にない。</td><td><input type="checkbox"/></td></tr> </table>	都道府県	神奈川県	市区町村	横浜市	住所	神奈川県横浜市	住所が日本国内にない。	<input type="checkbox"/>
都道府県	神奈川県																
市区町村	横浜市																
住所	神奈川県横浜市																
住所が日本国内にない。	<input type="checkbox"/>																
都道府県	神奈川県																
市区町村	横浜市																
住所	神奈川県横浜市																
住所が日本国内にない。	<input type="checkbox"/>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하시는 분의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주소지를 기입하십시오.

※ 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의 개정 결정에 의한 시정촌민세의 과세소득액(과세표준액) 또는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의 변경, 이혼·사별, 양자 결연 등으로 보호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3. 확인사항】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ㄴ표를 하십시오.)

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하는 것, 그리고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설치자(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ㄴ표를 하십시오.

전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업료를 내셔야 합니다!

◆ 다음 서류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하지 않는 분이라도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용)」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1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용)
- 2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 제 1 호)
- 3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 첨부 대지
 - ※ 원칙적으로 보호자(친권자)의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3 페이지 째 참조)를 대지에 풀로 붙여 주십시오.
- 4 보호자(친권자)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 사본

◇ 서류에 기재할 때, 특히 다음의 확인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심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뒷면)의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뒷면)의 2023 년 1 월 1 일 시점의 주소지

◆ 연수입이 약 910 만엔 이상인 세대는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계산식(보호자(친권자) 전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30 만 4,200 엔 이상(연수입 약 910 만엔 이상)』 인 세대는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수입 910 만엔이라는 것은 기준이므로, 그 이상이어도 계산한 결과가 30 만 4,200 엔 미만이 되어,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식】시정촌민세의 과세표준액× 6 %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 정령(政令) 지정도시인 경우는 「조정공제액」에 3/4 를 곱해 계산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학생 본인이 늦은 생(1월 1일~4월 1일생)이라서, 부양공제 적용이 다른 동학년 학생보다 1년 늦어지는 경우(2023년 7월~다음해 6월분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2일~4월 1일생 학생 대상)는, 보호자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33 만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보호자의 과세표준액 등은 마이나 포털에서 '나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マイナポータルHP



※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합니다.

상기 계산식에
의한 산출액

30 만 4,200 엔 이상
30 만 4,200 엔 미만



신청 안 함
신청 안 함

신청/불인정

신청/인정

수업료 납부

납부 안 함

※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2023 년 8 월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학지원금(2023년 7월 ~ 2024년 6월 분)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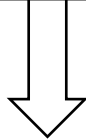
2023년 6월

【취학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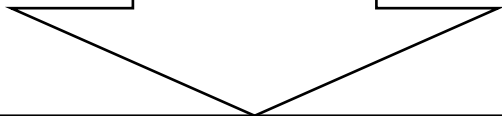
- 제출 서류
 - 1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용)
 - 2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 제 1호)
 - 3 개인정보카드 등의 사본 첨부 대지
 - 4 보호자(친권자)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제출 서류
 - 1 취학지원금 확인표(마이넘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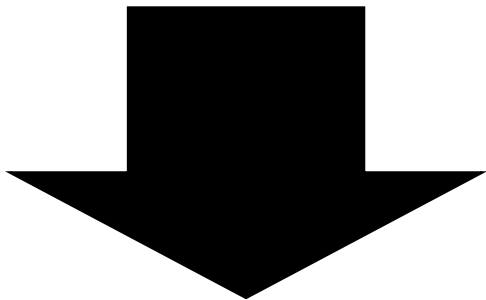


제출 기한 : 2023년 월 (月) 일 (日)



2023년 7월

2023년 7월 ~ 2024년 6월 분의 심사
현교육위원회가 개인정보(마이넘버)를 사용해 세액을 확인해,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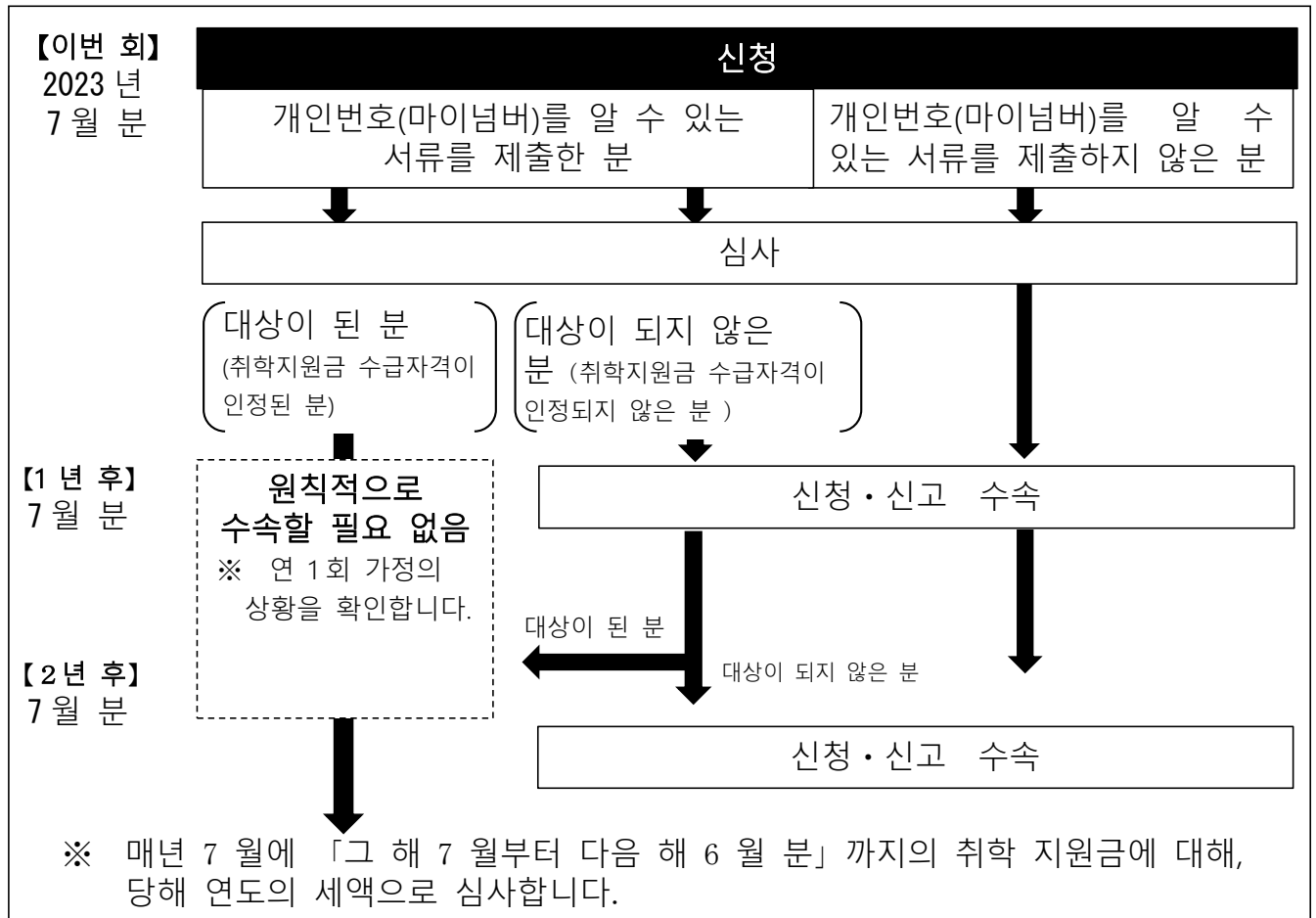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 취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라도, 신청이 늦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하십시오.

※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2023년 8월 이후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취학지원금 신청에는 '마이넘버'가 편리합니다.

- 개인정보(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취학지원금 대상이 된 분(수급 자격이 인정된 분)은 가정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졸업까지 원칙적으로 신청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 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마이넘버를 대신해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한) 분은 **매년 7월에 다시 수속이 필요**합니다.
- 취학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분)은, **다음해 7월에 신청 수속이 필요**하지만,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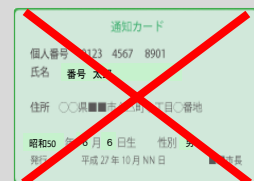
◆ 개인정보 (마이넘버) 를 알 수 있는 서류란 ?

- 개인정보카드(마이넘버카드) 사본
- 개인정보(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
- 개인정보(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 주민표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는 보호자(친권자) 이외에 다른 분의 개인정보(마이넘버) 기재가 없는 것을 제출하십시오.



【주의】

원칙적으로
개인번호통지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 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번호)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디지털 수속법의 시행일(2020년 5월 25일) 이전에 개인번호통지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 수속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통지서, 개인정보카드 교부신청서나 그 사본은, 법률상 마이넘버 확인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번호 (마이넘버) 의 이용 목적은 ?

- ◇ 「시정촌민세의 과세 표준액」과 「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액」 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 ※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2 년의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했습니까?

-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십시오.
2023 년도의 세액(2022 년 1 월 1 일~12 월 31 일의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마이넘버로 세금 정보를 취득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취학지원금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지급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번호 (마이넘버) 이외의 서류로 신청하고 싶은 분

- ◇ 과세증명서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 경우 졸업까지 매년 7 월에 해당 연도의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가계 급변 세대예의 지원에 대하여

- ◇ 가계 급변 세대예의 지원이란?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심사에서, 연수입 약 910 만엔 이상인 세대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수업료를 납부하시는 분이어도, 그 후의 사정으로 가계 급변(수입의 격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제도의 가계 급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가계 급변 지원이 2023 년도에 새로 창설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 용)

(알림 R5-E)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꼭 제출하십시오.)

학생 성명	반 등 학년 반 번
보호자 1 (성명)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보호자 2 (성명)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주의 사항

- 별지 "기재례"를 참조하여 확인사항의 번호에 따라 기입하십시오.
- 학생 본인이 기입하십시오. 보호자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

확인 사항 1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을 신청합니까?

【아래 중 하나에 표를 하십시오.】

신청합니다.

(취학지원금 대상이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확인 사항 2

제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제출 서류】

-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 용) <본 용지> 기입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용지를 제출하십시오. 확인 사항 3 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취학지원금 확인표 (마이넘버 용) <본 용지>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 첨부 대지
- 보호자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 사본
- ※ 학생 본인이 제출 서류 전부를 직접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 기타 ()

확인 사항 3

- 확인 사항 2의 제출 서류는 장학금부금 지급 사무에서도 사용합니다.
- 확인 사항 2의 제출 서류로 장학금부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게는, 학교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학금부금의 상세한 내용은 "기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뒷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4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 대지에 기재 · 첨부시 유의 사항

- 굵은 테두리 안의 부분을 손으로 써 주십시오.
【기입 부분】
 - 확인 사항 5 : 학생 성명, 후리가나
 - 확인 사항 6 : 보호자 인원수
보호자 1의 성명, 개인번호(마이넘버), 생년월일
보호자 2의 성명, 개인번호(마이넘버), 생년월일
- ※ 한 부모인 경우에는 보호자 1만 기입해 주십시오.
- 보호자 전원의 개인번호카드의 사본을 해당란에 풀로 붙여 주십시오.
-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호자 전원의 개인번호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 혹은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본 용지(첨부 대지)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대지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번호통지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 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번호)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디지털 수속법의 시행일(2020년 5월 25일) 이전에 개인번호통지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 수속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을 첨부 대지에 기재 · 첨부해 주십시오.

➔ (**확인 사항 5** 로 가십시오.)

(학교 사용란) 이하는 학교에서 기입합니다. 기입하지 마십시오.

● 提出状況の確認

提出書類 提出方法		提出区分	確認票	申請・届出書	台紙	個人番号 コピー		身分証明書 呈示		身分証明書 コピー提出		生保証明	その他
						保護者 1	保護者 2	保護者 1	保護者 2	保護者 1	保護者 2		
						対面	生徒本人						
保護者全員													
保護者一部													
その他													
郵送・封入													

学校受付日 : 令和 年 月 日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 첨부 대지

확인 사항5

학교 접수일 : 년 월 일

학생 성명, 후리가나를 기입하십시오.

학교 명칭	가나가와현립●●고등학교
학교 종류·과정·학과	
학생 성명의 후리가나	
학생 성명	

확인 사항6

- 개인번호 (마이넘버) 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보호자의 인원수를 기입하십시오.
- 보호자의 성명, 개인번호(마이넘버),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 개인번호카드의 사본을 아래에 풀로 붙여 주십시오.
-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는, 풀로 붙이지 마시고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을 신청(신고)하기 위해, 보호자 명분의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나가와현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신청 대상이 된 경우 신청에, 이번에 제출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이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보호자 1 성명	개인번호 (마이넘버)	생년월일
		년 월 일
풀로 붙임 앞면		풀로 붙임 뒷면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앞면) <small>※ 개인번호통지카드의 사본은, 기재 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번호)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디지털 수속법의 시행일(2020년 5월 25일) 이전에 개인번호통지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 수속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풀로 붙일 수 있습니다.</small>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뒷면)
보호자 2 성명	개인번호 (마이넘버)	생년월일
		년 월 일
풀로 붙임 앞면		풀로 붙임 뒷면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앞면) <small>※ 개인번호통지카드의 사본은, 기재 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번호)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기재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디지털 수속법의 시행일(2020년 5월 25일) 이전에 개인번호통지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 수속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서만, 풀로 붙일 수 있습니다.</small>		개인번호카드의 사본 (뒷면)

기재례

全員提出 (お知らせ R5-E)

就学支援金確認票 (マイナンバー用)
(申請の有無にかかわらず必ず提出してください。)

生徒氏名 **番号 子太郎** クラス等 **2** 年 **1** 組 **30** 番

保護者 1 (氏名) **番号 太郎** 日中連絡が取れる電話番号 **XXX-XXXX-XXXX**

保護者 2 (氏名) **番号 花子** 日中連絡が取れる電話番号 **XXX-XXXX-XXXX**

注意事項

- 別紙の「記載例」を参照の上、確認事項の番号に沿って記入してください。
- 生徒本人が記載してください。保護者等による代筆も可能です。

確認事項 1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の申請をします。
【下のどちらかの □ にし印を入れてください。】

申請します。
(就学支援金の対象であれば、授業料の負担はありません。)

申請しません。
(授業料をご負担いただきます。)

確認事項 2

提出書類をご確認ください。

【提出書類】
 就学支援金確認票 (マイナンバー用) <本用紙>
 記載はここまでです。本用紙をご提出ください。確認事項3は、確認不要です。

【提出書類】

- 就学支援金確認票 (マイナンバー用) <本用紙>
-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認定申請書
- 個人番号カード等のコピー貼付台紙
- 保護者の顔写真付き身分証明書のコピー

※ 生徒本人が提出書類一式を直接提出する場合は、身分証明書のコピーは不要です。

その他 ()

確認事項 3

- 確認事項2の提出書類は、奨学給付金支給事務でも使用させていただきます。
- 確認事項2の提出書類から、奨学給付金の支給対象となる可能性がある世帯の方には、学校からご連絡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 奨学給付金の詳細は「記載例」をご覧ください。

申請する方は、裏面もご覧ください。

확인 사항 1 에 대하여

-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분이나, 기준액을 초과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을 위해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신청します(신청합니다)"에 ㄴ표를 하십시오.

- 장학금부금(가나가와현 고등학생등장학금부금)이란? 생활보호 수급 세대 또는 주민세 소득할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급부금(반환할 필요 없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
<http://www.pref.kanagawa.jp/docs/en7/cnt/f531013/>
- 장학금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에는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등은 학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6월 하순 경)
- 취학지원금 신청에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장학금부금 신청에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게는, 학교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례

個人番号カード等のコピー貼付台紙

確認事項5 学校受付日: 令和 年 月 日

生徒氏名、ふりがなを記入してください。

学校の名称	神奈川県立●●高等学校
学校の種類・課程・学科	
生徒氏名のふりがな	ほんごう こたろう
生徒氏名	番号 子太郎

確認事項6

- 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がわかる書類を提出する保護者の人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 保護者の氏名、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 個人番号カードのコピーは下記にのり付けてください。
- 住民票の写し、又は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原本又はコピーの場合は、のり付けせずそのまま提出してください)。

-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の申請(届出)のため、保護者 2 名分の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がわかる書類を提出します。また、神奈川県高校生等奨学給付金の申請対象となった場合の申請に提出した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を利用することを承諾します。

保護者1 氏名	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	生年月日
番号 太郎	0123-4567-8901	昭和 50年 6月 6日

<p>のり付け オモテ面</p> <p>個人番号カードのコピー(オモテ面)</p> <p><small>※ 個人番号通知カードのコピーは、記載事項(氏名、住所、生年月日、性別、個人番号)を変更すべき事項が発生しておらず、記載事項に変更がない場合、又はデジタル手続法の施行日(令和2年5月25日)以前に個人番号通知カードの記載事項の変更手続が完了している場合に限り、のり付け可能です。</small></p>	<p>のり付け</p> <p>個人番号カ</p>
---	---------------------------------

保護者2 氏名	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	生年月日
番号 花子	1234-5678-9012	平成 52年 3月 31日



확인 사항 6 에 대하여

- “배우자 공제”를 받고 있는 보호자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번호카드 사본을 풀로 붙일 경우는, 앞면과 뒷면의 양쪽을 붙여 주십시오. (이 경우, 당해 보호자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증명서는 이미지입니다.
양식이나 기재 사항은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

氏名	生年月日	性別	続柄
番号 太郎	昭和 50年 6月 6日	男	世帯主
世帯主名	住民となった日	個人番号	
番号 太郎	平成 24年 5月 1日	012345678901	

住所	神奈川県横浜市中区日本大通り 1000		
本籍	神奈川県横浜市●区●●100	筆頭者	番号 太郎
前住所	神奈川県横浜市●区●●100		
備考	발행된 상태 그대로, 첨부 용지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2 장 이상인 경우는 모든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この写しは、住民票の原本と相違ないことを証明する。

令和●年●月●日

●●市長 ●● ●● **印**

보호자 1의 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인 경우

제출하지 않으면 수업료를 내셔야 합니다 !

◆ 다음 서류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하지 않는 분이라도 신청 의사 확인을 위해 「취학지원금 확인표 (과세증명서용)」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1 취학지원금 확인표 (과세증명서용)
- 2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수입 상황 신고서 (양식 제 1호·2)
- 3 2023 년도 과세증명서 등

※ 과세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2023 년도 과세증명서 등이란?"을 참조하십시오.

◆ 2023 년도 과세증명서 등이란?

2023 년도 과세증명서 등 (다음 아~우 서류 중 하나) 을 제출하십시오.

보호자(친권자) 전원 (부모가 있는 경우는 두 명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과세증명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호자의 산정기준액(다음 항의 [연수입이 약 910 만엔 이상인 세대는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의 계산식 참조)이 30 만 2,700 엔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과세증명서 등(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2023 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 사본

이 2023 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세금 담당 부서에서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유료)

발행받을 때는 반드시 별첨의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과 관련된 과세 증명서(보족)의 발행에 대해」를 시구정촌의 창구에 제시해 주십시오.

(취학지원금 심사에 필요한 세금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

우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원본

※ 2023 년 1 월 1 일 시점에 생활보호 수급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정촌민세·현민세 특별징수세액 통지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수입이 약 910 만엔 이상인 세대는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계산식(보호자(친권자) 전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30 만 4,200 엔 이상 (연수입 약 910 만엔 이상)』 인 세대는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수입 910 만엔이라는 것은 기준이므로, 그 이상이어도 계산한 결과가 30 만 4,200 엔 미만이 되어,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식】시정촌민세의 과세표준액×6%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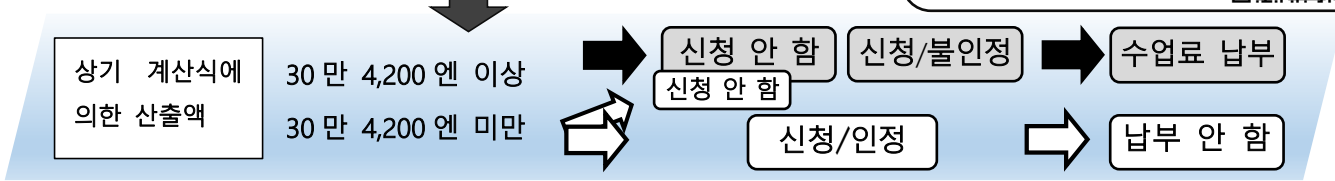
- ※ 정령(政令) 지정도시인 경우는 「조정공제액」에 3/4를 곱해 계산
- ※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학생 본인(이 늦은 생(1월 1일~4월 1일 생)이라서, 부양공제 적용이 다른 동학년 학생보다 1년 늦어지는 경우(2023년 7월~다음해 6월분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2일~4월 1일생 학생 대상)는, 보호자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33 만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보호자의 과세표준액 등은 마이나라 포털에서 '나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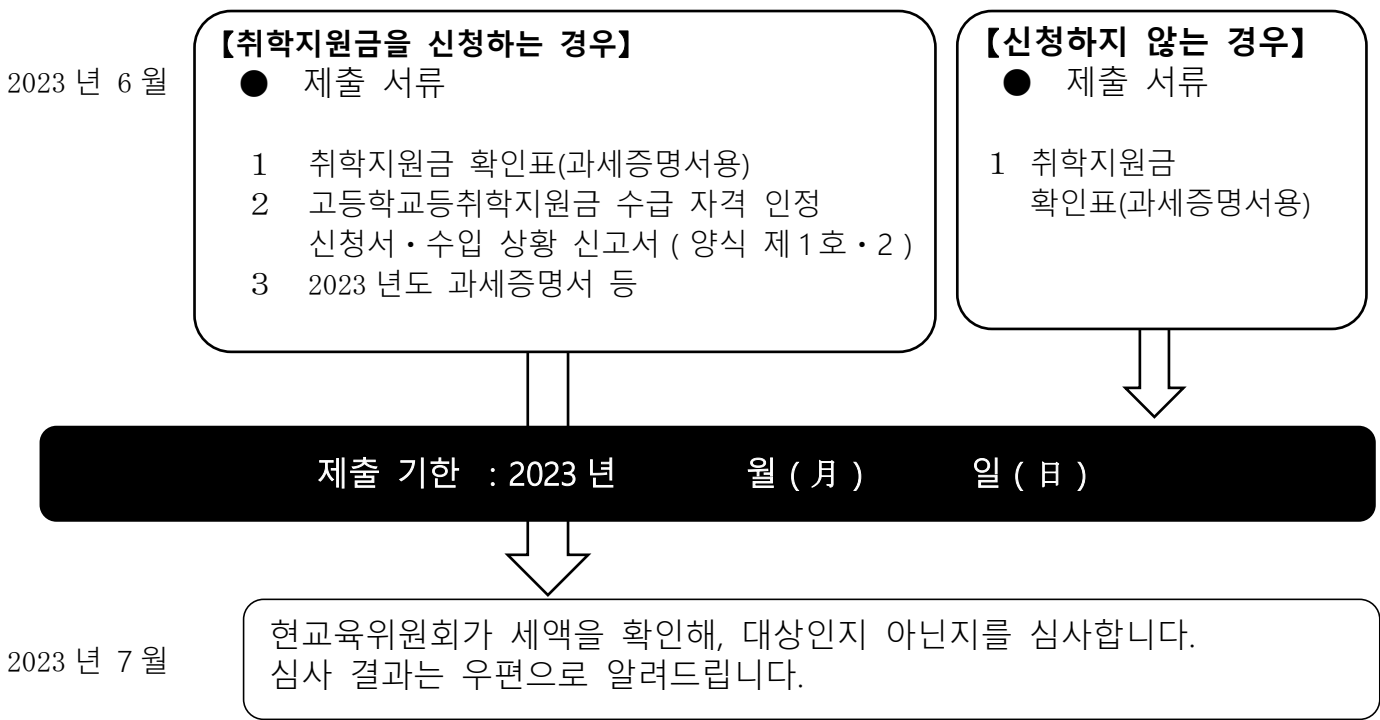


マイナポータルHP



※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2023년 8월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학지원금(2023년 7월 ~ 2024년 6월 분)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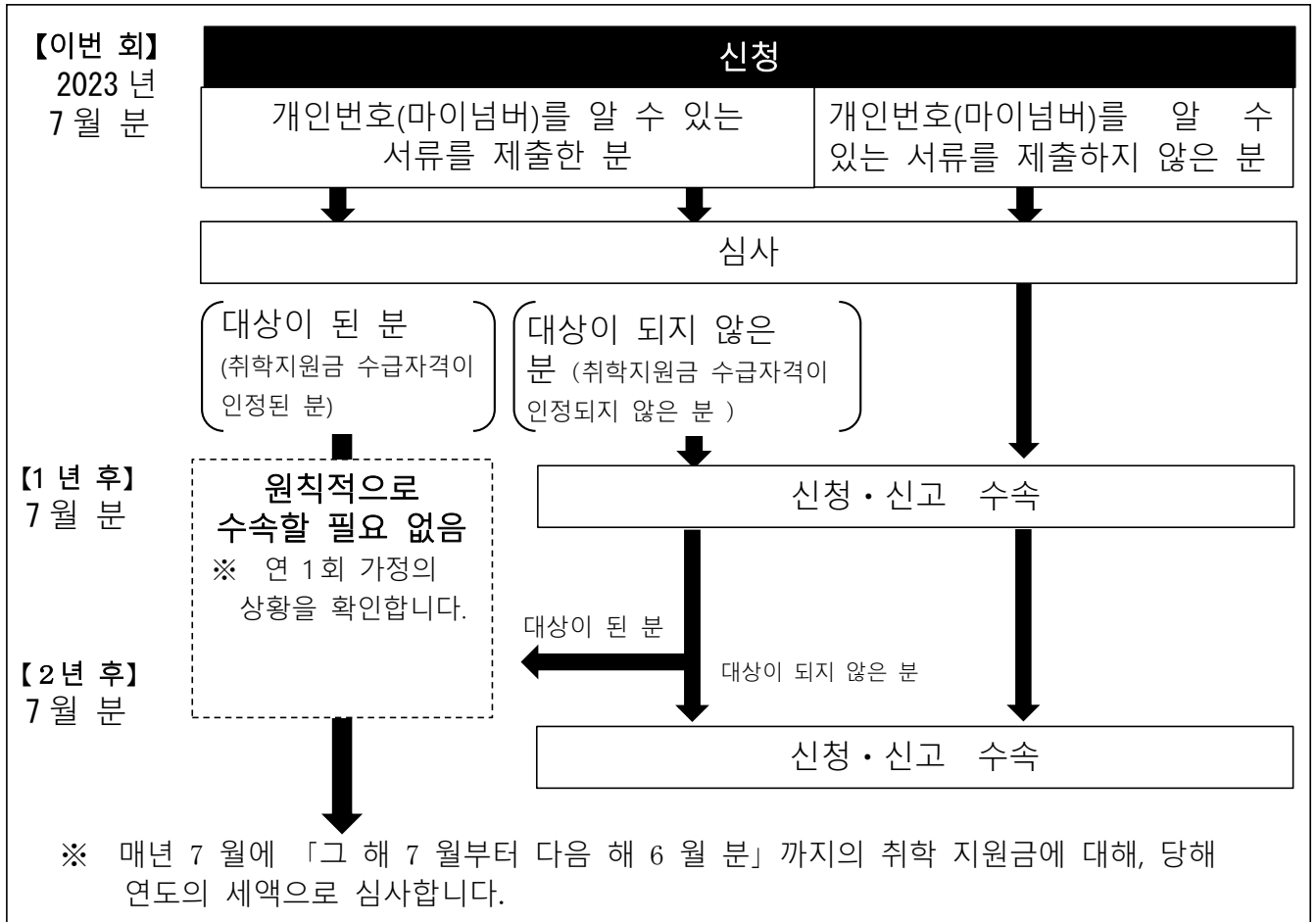


※ 취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라도, 신청(신고)이 늦거나, 신청(신고)하지 않으면,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하십시오.

※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2023년 8월 이후에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참고) 취학지원금 신청에는 '마이넘버'가 편리합니다.

- 개인정보(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취학지원금 대상이 된 분(수급 자격이 인정된 분)은, 가정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졸업까지 원칙적으로 신청 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 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마이넘버를 대신해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한) 분은, **매년 7월에 신청 또는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
- 취학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분)은, **다음해 7월에 신청 수속이 필요**하지만,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개인정보(마이넘버)로 신청하고 싶은 분

- ◇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번호(마이넘버) 용 신청·신고 서류를 드립니다.

(참고) 가계 급변 세대에의 지원에 대하여

◇ 가계 급변 세대에의 지원이란?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심사에서, 연수입 약 910 만엔 이상인 세대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수업료를 납부하시는 분이어도, 그 후의 사정으로 가계 급변(수입의 격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제도의 가계 급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가계 급변 지원이 2023 년도에 새로 창설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지원금 확인표 (과세증명서 용)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꼭 제출하십시오.)

학생 성명	반 등	학년	반	번
보호자 1 (성명)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보호자 2 (성명)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전화 번호			

주의 사항

- 확인사항의 번호에 따라 기입하십시오.
- 학생 본인이 기재하십시오.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

확인 사항 1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을 신청합니까?

【아래 중 하나에 표를 하십시오.】

신청합니다.

(취학지원금 대상이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확인 사항 2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취학지원금 확인표 (과세증명서 용) <본 용지> 기입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용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3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취학지원금 확인표 (과세증명서 용) <본 용지>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수입 상황 신고서
- 2023 년도 과세증명서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2023 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 사본
 - 2023 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2023 년도 과세증명서(보족)의 원본 또는 사본※
- ※ 원칙적으로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경우는, 과세증명서(보족)도 필요합니다.
-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원본 (2023 년 1 월 1 일 시점에서의 생활 보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하시는 분은 뒷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접수일 : 년 월 일

확인 사항 3

- 확인 사항 2의 제출 서류는 장학금부금 지급 사무에서도 사용하겠습니다.
- 장학금부금 (가나가와현 고등학생등 장학금부금) 이란 ?
생활보호 수급 세대 또는 주민세 소득할비과세인 세대를 대상으로,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급부금(반환할 필요 없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
<http://www.pref.kanagawa.jp/docs/en7/cnt/f531013/>
- 장학금부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는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등은 학교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6월 하순 경)
- 취학지원금의 신청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장학금부금의 신청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재차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게는, 학교에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례

令和 ○年 ○月 ○日

이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오.

神奈川県教育委員会 殿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受給資格認定申請書 (初回時)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以下「就学支援金」といいます。) の受給資格の認定を申請します。

【둘 중 하나의 □안에 ㄹ표를 하십시오.】
 ·처음 취학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서(첫 회째)」에, ㄹ표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취학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던 분은 「신고서(2회째 이후)」에 ㄹ표를 하십시오.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첫 회째)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이하「취학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収入状況届出書 (2回目以降)
 既に受給資格認定を受けているため、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して、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届け出ます。

수입 상황 신고서 (2회째 이후)
 이미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취학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겠습니다.
 (上の2つの□のうち、いずれかの□にㄹ印を付けてください。)
 (次の事項を必ず確認の上、両方の□にㄹ印を付けてください。)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두 개의 □안에 ㄹ표를 하십시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고,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부정 이득의 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以下の空欄に生徒本人が署名してください。保護者等による代筆も可能です。記入に当たっては、別紙の「記入上の注意」および「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から記入してください。)

학생 본인이 기입. 보호자 등에 의한 대필도 가능합니다. 별지 기입상의 주의 및 유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해 주십시오.

ふりがな	ほんごう		こたろう	
せいと しめい 生徒の氏名	せい 姓	ばんごう 番号	めい 名	こたろう 子太郎

학생의 성명과 '후리가나'를 기입하십시오.

せいと せいねんがつび 生徒の生年月日	平成19 ねん 8 がつ 15 にち 年 8 月 15 日
せいと じゅうしょ 生徒の住所	〒231-0021 神奈川県 横浜市 中区日本大通り1000
ほごしゃとう 保護者等の 電話番号	父090-0000-0000 母080-0000-0000
ほごしゃとう 保護者等の電子 メールアドレス	XXXXXXXXXXXX@XXXXX.XX.XX
せいと ざいがく 生徒が在学する がっこう 学校の名称	神奈川県立○○学校

학생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학생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전화번호는 주간(낮)에 연락이 되는 연락처를, 보호자 전원 분 기입하십시오.
 전자 메일 주소는, 연락이 되는

【1.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에 대하여】 (수입상황신고서의 경우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등(수학 연한이 3년 미만인 학교는 제외합니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정시제・통신제 등은 4분의 3으로 계산)이 통산해 36 개월을 초과한 사람(다만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っこうめい 学校名	年 月 日 ~ ~ 年 月 日 (うち支給停止期間等)	がっこうしゅるい がかい 学校の種類・課程・学科
①現在 通っている高 とうがっこうとう さいがきかん 等学校等の在学期間	神奈川県立○○学校	①高等学校 (全日制)
가っこうめ이 学校名	年 月 日 ~ ~ 年 月 日 (うち支給停止期間等)	がっこうしゅるい がかい 学校の種類・課程・学科
②過去に別の高等学 か こ べつ とうがっこう 校等に在学していた期間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 등에 입학(전입학)한 날짜 등을 기입하십시오.

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했던 경우는 여기에 기입하십시오.

【2.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하여】

(1) 취학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시기의 구분 (어느 하나의 □에 √표를 하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월 ~ 6월(전년도와 과세 증명서 등을 첨부)	<input type="checkbox"/> 7월 ~ 다음해 6월(금년도와 과세 증명서 등을 첨부)
--	---

(2) 신청 또는 신고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과세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①~⑧ 중에서 하나의 □안에 √표를 하십시오.)

(2)-1 다음의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권자(부모) 2명분 학생이 미성년(18세 미만)이고 친권자(양친)이 2명 존재하는 경우
---	-------------------------------------	---

①~⑧중에서 하나의 □안에 √표를 하십시오.

②	<input type="checkbox"/>	친권자 1명분 (ア부터 ウ까지의 어느 하나의 □에 √표를 하십시오.)	친권자가 임시 친권을 가진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인 경우에는 ⑤~⑧ 중 하나에 체크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ア	친권자 1명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고,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イ	친권자 1명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등,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ウ	·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친권자 한 명의 과세 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

친권자가 없고,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인원수를 기입하십시오.

③	<input type="checkbox"/>	미성년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 단, 미성년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을 제외합니다.)
---	--------------------------	---

④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주된 생계유지자'라고 한다)(양친 등)2명분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 성인이 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
---	--------------------------	--

⑤	<input type="checkbox"/>	주된 생계유지자 1명 분 (ア부터 ウ까지의 어느 하나의 □에 √표를 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ア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이 된 경우로, 부모 중 1명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고,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 제한 요건이나 가산지급 구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イ	주된 생계유지자 1명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ウ	·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

⑥	<input type="checkbox"/>	학생 본인 ·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성인이 된 경우 · 미성년이지만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는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
---	--------------------------	--

(2)-2 다음 이유로 과세 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⑦	<input type="checkbox"/>	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지만, 미성년이고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될 정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	--------------------------	--

⑧	<input type="checkbox"/>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주된 생계 유지자 또는 학생 본인 전원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
---	--------------------------	---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⑦ 또는 ⑧에 √표를 한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しめい 氏名	せいと つづがら 生徒との続柄	しめい 氏名	せいと つづがら 生徒との続柄
番号 太郎	父	番号 花子	母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분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를 기입하십시오.

※ 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의 개정 결정에 의한 시정촌민세 과세소득액(과세표준액) 또는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의 변경, 이혼·사별, 양자 결연 등으로 보호자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3. 확인사항】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표를 하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하는 것, 그리고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설치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	---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표를 하십시오.